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C C C C C C ΣΣ지구(≡≡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ΣΣ시 ㉠㉠㉠과 에서는 관내 00동 산00번지 일원에 C C C C C C ΣΣ지구(≡≡마을) 조성사업을 '13.11.15. * * 건설(주) 대표 * * *과 도금액 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3.11.19.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1)치목의 경우 가공과정(사각 → 8각 → 16각 → 원형목)이 복잡한 전통방식의 문화재표준품셈을 적용하였으나 본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가 아닌 건축물로 가공된 원형목을 구입 시공되어 일부과정이 생략되었음에도 공사비 128,200천원에 대한 설계변경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지의 높이차에 따라 옹벽구조물 80m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부지의 절·성토 등으로 높이차가 줄어 현장여건의 변동에 따라 옹벽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한 설계변경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결심도 깊이가 이하에서는 동상방지층이 불필요함에도 반영되어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음.

1) 치목(治木) : 자르기, 깎기, 다듬기, 마무리 등 나무를 다듬어 부재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그 결과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 되었음에도 '16. 12. 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벨트 ΣΣ지구(√√√√마을) 조성사업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 ㉠ ㉠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ΣΣ시 ㉠ ㉠ ㉠ 과 에서는 관내 00읍 00리 0번지 일원에 △△△ △△△ ΣΣ지구(○○○○○○○○) 조성사업을 '13.11.19. ＊＊＊＊＊건설(주) 대표 ＊＊＊＊＊과 도 급액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3.11.25.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건축물 지하층 터파기한 잔토 12,717㎥를 외부로 반출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장내 성토등으로 활용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00천원을 감액 조치 하지 않았고, 가설공사 현장사무실은 당초 830㎡설치 계획하였으나 510㎡만 설치되었음에도 공사비 00,000천원을 감액조치 하지 않았고, 철근가공 물량은 실지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물량만 반영되어야 함에도 직선근 35톤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12.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ΣΣΠΠ ΠΠΠΠΠΠ(추모권역)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0000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ΣΣ시 0000과 에서는 관내 △△△ 00리 산0번지 일원에 ΣΣΠΠ ΠΠΠΠΠΠ(추모권역) 조성업을 '13.11.29. (주)○○건설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3.12.9.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설계도면에 없고 마땅한 사용처도 없는 석재 두께 100T 자연석 판석 188㎡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자재비 00,000천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았고, 철근가공 물량은 실제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물량만 반영되어야 함에도 직선근 21톤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 12. 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IC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과
내 용

ΣΣ시에서는 2013. 6. 28 √√√√건설(주)(대표이사 √√√)과 “∞∞∞~≡≡≡≡IC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3. 7. 9. 착공하여 2017. 3. 27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등 총 2건의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ΣΣ시 □□□□과에서는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제와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았으나 검토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과 시공에 따른 안전관리,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ΣΣ시 □□□□과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 검토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장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노면표시용 차선도색 설계 부적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및 KS M6080(기술표준원 고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규정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표시용 도료는 1종부터 5종까지의 5종류 가운데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4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5종) 등 3종류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도로공사에는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가 적정함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1종)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다.

4.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비 등 6개 정산항목(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담금)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 따르면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6개 정산 항목은 정산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ΣΣ시 ㄴㄴㄴㄴ과에서는 ∞∞∞~ㄷㄷㄷㄷIC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 등 6개 정산항목 0,000천원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기존 콘크리트포장 깨기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위한 기존도로 굴착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가 노체에 위치할 경우 기존 포장체를 그대로 두면 다짐이 잘된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런데도 ΣΣ시에서는 ∞∞∞~ㄷㄷㄷㄷIC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설계는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깬 후 건설폐기물로 처리 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를 그대로 깨지말고 그대로 두어 공사비 00,000천원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측도 가시설 과다설계

∞∞∞~ㄷㄷㄷㄷIC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청통천교 설치에 따라 임시 가도를 축조하면서 공사비 절감은 물론 시공 효율성 및 경제적인 토마대 쌓기가 적정함에도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P.P마대 쌓기를 적용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하게 계상 하였다.

라.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하는 시설로,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 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00교 확장공사는 교량 신설 사업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제외하여 사업비 00,000천원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구조물공 면고르기 과다계상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5. 1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파암 면고르기는 브레이크로 시공시는 면고르기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확장에 따른 구조물 터파기는 대형브레이크로 시공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암면 고르기가 이중계상 되어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공사비 00,000천원

(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과

내 용

ΣΣ시에서는 2015. 9. 4. (주)∈∈∈∈건설(대표이사 ΠΠΠ)과 “∇∇~∈∈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5. 9. 14. 착공하여 2019. 9. 12일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ΣΣ시 □□□□과에서는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계와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았으나 검토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과 시공에 따른 안전관리,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ΣΣ시 □□□□과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 검토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장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노면표시용 차선도색 설계 부적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및 KS M6080(기술표준원 고시),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규정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표시용 도료는 1종부터 5종까지의 5종류 가운데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 용착식 노면표시용 도료(4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5종) 등 3종류 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도로공사에는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가 적정함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1종)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다

4.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사토용 발파암 활용방안 미검토 등 사업추진 소홀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등 (토사 1,087m³, 리핑암 2,405m³, 발파암 20,213m³)을 먼 거리의 사토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공사장에 유용하거나 발파암을 잘게 부수어 보조기층이나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면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음에도 이에대한 개선방법을 검토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나. L형측구 설계 부적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의 배수는 노면수의 흐름지체, 월류, 지하수 유입 등으로 도로 하부지반이 약화 되거나 포장의 손상 등을 방지하고,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에 내린 우수를 L형측구, 집수정 등의 노면 배수시설을 통하여 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노면의 배수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및 도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L형 측구를 설치하며, 측구의 연장 시공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13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형 측구는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인력타설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L형측구는 시공성과 미관,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타설을 기계타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과다계상된 사업비 00,000천원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기존구조물깨기 단가산출 과다

위 공사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등 기존구조물깨기 공종을 살펴보면 굴삭기(무한 궤도 0.7m³+브레이카)로 콘크리트를 깬 후 들어내기로 구성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덤프트럭 상차 공종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 구조물 깨기 후 들어내기 공종이 없어도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덤프트럭 상차 작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들어내기와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차 공종을 중복 반영하고 있어 들어내기를 삭제하여 과다계상 된 공사비 0,000천원 (제경비포함)을 절감함이 타당하다.

라. 교명주 과다 반영

노후된 ㉔㉔교(L=448m, B=5.0m)를 승상하고 슬라브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교명주 설치 4개소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위 ㉔㉔교의 경우 폭 5.0m의 교량으로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량으로 교명주 4개소는 과다하므로 2개소로 축소 조정 하여 이에 상당하는 과다계상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절감함이 타당하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㉔㉔㉔㉔㉔㉔(ΣΣ캠퍼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㉔㉔㉔과
내 용	

ΣΣ시에서는 2016. 9. 8. ㉔㉔건설(주)(대표이사 **)과 “㉔㉔㉔㉔㉔㉔(ΣΣ 캠퍼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6. 9. 19. 착공하여 2018. 3. 17일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1. 품질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ΣΣ시 ㉔㉔과에서는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계와 함께 건설업자로 부터 제출받았으나 검토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과 시공에 따른 안전관리,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Sigma\Sigma$ 시 $\square\square\square\square$ 과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 검토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장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노면표시용 차선도색 설계 부적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및 KS M6080(기술표준원 고시),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규정에 따르면 채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표시용 도료는 1종부터 5종까지의 5종류 가운데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 용착식 노면표시용 도료(4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5종) 등 3종류 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int\int\int\int\int\int\int(\Sigma\Sigma$ 캠퍼스) 진입도로 공사에서는 채귀반사성능이 요구 되는 도로공사에는 수용성 노면표시용 도료(2종)가 적정함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1종)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다.

4.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사토용 발파암 활용방안 미검토 등 사업추진 소홀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등(토사 5,639m³, 풍화암 1,484m³, 연암 18,483m³)을 먼 거리의 사토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공사장에 유용하거나 발파암을 잘게 부수어 성토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면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음에도 이에대한 개선방법을 검토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나. 건설장비 조합 불합리

위 공사 구조물공 되메우기 및 다짐 공종의 단가구성을 살펴보면 굴삭기(무한 궤도 0.7m³)로 되메우기 후 램머(80kg)로 다짐 토록 계획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의 총 대상 토량이 4,306m³으로 램머(80kg)로 다짐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토량이 과다하므로 장비의 조합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도 위 공사에서는 되메우기 및 다짐을 그대로 시공 할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 이 공사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램머 다짐을 콤팩트 등 효율적인 다짐장비로 교체 할 경우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 하수관 CCTV조사 분리발주 미이행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 5.22)에는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하수관 CCTV조사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자체에 분리발주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따라서, 본 공사에 포함된 하수관 CCTV 조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은 분리발주 또는 외주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라. 암파쇄 방호시설 시공 및 실정보고 승인 불합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을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 시방서 등에 따르면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제품 사용시에는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H형강 단가구성을 살펴보면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로 산출되어 있고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녹슬고 천공이 발생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한 재사용 H형강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된 실정보고에 따르면 기존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절토법면 암파기 구간중 No.9+0.0~No.13+4.0(L=84m)에 높이 4.0m의 암파쇄 방호시설 추가설치 요청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하여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할 예정으로 있다.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 높이는 계획절토고가 10.0m이하이고 기존 사면경사가 1:0.7~1:1.2일 경우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 높이를 3.0m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 연장 134m(당초 L=50m H=4.0m, 실정보고에 따른 추가 승인 L=84m H=4.0m)를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높이를 4.0m에서 3.0m로 조정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하수관 CCTV 조사는 분리 또는 외주 발주 하시고, 암파쇄 방호시설은 재시공토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V V V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 * *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ΣΣ시 * * * * *과에서는 V V V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2. 11.22. °°건설㈜ °°°과 계약체결하여 2017. 4. 2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호안공 식생매트 설치 관련

본 공사의 호안공에 설치되는 식생매트 설치 물량은 A=10,653㎡(No.20+23~No.35 A=4,336㎡, No.49+20~No.68 A=6,317㎡)로 내역서와 관급자재 수량(할증 포함)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내역서 수량 A=10,653㎡에 대한, 할증 포함 관급자재 수량은 A=11,719㎡가 되어야 함에도,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관급자재 수량 A=11,949㎡으로 과다(증A=230㎡)적용되어, 식생매트 자재대 및 설치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성사업(토목+조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0000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ΣΣ시 0000과에서는 조성사업(토목+조경)을 아래 [표] 와 같이 2016. 1. 26. √/√건설(주) √/√/와 계약체결하여 2019. 1. 30.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데크 설치 관련

「건설품셈」 제7장 철골공사편에 따르면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는 내력식과 비내력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립설치 품에 대하여는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공사에서 데크설치는 지붕트러스가 아닌 일반적인 데크공법으로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을 적용함이 경제적인데도, 단가가 고가인 지붕트러스에 적용하는 내력식을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낭비 되었다.

2. 가드레일 및 부지임대료 관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따르면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호울타리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은 비탈면 경사 1:1.5일 경우 비탈면 높이 3m 이상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공사에서 하늘지구 숲애주차장 부지의 전체구간에 가드레일 901m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필요한 789m를 제외하면 가드레일 설치가 불필요한 112m는 비탈면 높이 3m미만으로 가드레일 설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또한,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36개월)는 제경비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급내역서에 부지임대료 0,000천원(제경비 포함)를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낭비 00,000, 감액 00,000)을 과다 계상하거나 낭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ΣΣ처리구역(3단계) 하수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ㄱㄱㄱㄱ소
내 용

ΣΣ시 ㄱㄱㄱㄱ소에서는 2015. 11. 4. (주)ㄱ/ㄱ/ ㄱ/ㄱ/과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5. 11. 10. 착공하여 2018. 11. 18. 준공 예정으로 ΣΣ처리구역(3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 발주할 때에도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에 준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장래 시설물 하자구분 곤란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ΣΣ시 ㄱㄱㄱㄱ소에서는 ΣΣ처리구역(3단계) 하수관로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00동, 00동 일원 차집관로는 압송관로로 ΣΣ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3. 6.)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자연유하식으로 변경 시공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별도발주를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사업구역 밖 차집관로 L=1.584km를 내부검토(00동 차집관로 신설공사 발주

계획, ㄱㄱㄱㄱ소-729호 2016.1.14.)를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분리발주하도록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도, 13일 이후 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다시 결재를 득하고(ㄱㄱㄱㄱ ㄱㄱㄱㄱㄱ ㄱㄱㄱㄱㄱ 사업병행 추진 계획, ㄱㄱㄱㄱ소-1392호 2016. 1. 27) 2016. 11. 9. 증액 설계변경하여 (주)ㄱ/ㄱ/ ㄱ/ㄱ/ 등에게 사업비 0,000백만원(제경비 포함)정도의 수의 계약 특혜를 부여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영천시 * * * * *
내 용

ΣΣ시 * * * * *에서는 2014. 12. 17. √/√ 건설(주) ∞∞∞과 공사계약 (0,000백만원)을 맺고, 2014. 12. 23. 착공하여 2018. 2. 17. 준공 예정으로 △△△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를, 2015. 1. 19. (주)≡≡≡≡≡≡ II II II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5. 1. 19. 착수하여 2018. 6. 2. 완수예정으로 △△△ 외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차선도색 설계 변경 부적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ΣΣ시 * * * * *에서는 차선도색 용착식 계약단가가(수동식 황색실선 7,313원/㎡, 백색실선 6,818원/㎡) 과소산정되었다는 사유로, 실정보고나 아무런 검토보고 없이 임의로 차선도색 공법을 용착식에서 상온식(황색6,597원/㎡, 백색6,278원/㎡)으로 부당하게 설계변경하여 00백만원(제경비 포함)정도의 재정 손실을 끼쳤으며, 시공된 상온형 차선도색은 차선평이 설계기준(15cm)에 미달함에도 준공처리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상수관로 품질관리 부적정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 5.22)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자체에 분리발주하여 부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86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8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편에 의하면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음번호, 시험년월일 등의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 * * * *에서는 상수관로 품질시험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관로 부설시 관련규정에 따라 200m마다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체 기지급된 수압시험비 41개소 중 27개소만 수압시험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4개소는 수압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 0백만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지급 하였으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 * * * *에서는 별도공사(△△△ □□□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로 시공완료된 구간을 사업구간에 포함시켜 000백만원(도급액 기준) 정도를 과다 산출하여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

4. 미끄럼방지 포장 과다 계상

관로부설후 기존도로 복구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은 관급구매(현장설치도, 00,000원/㎡ 정도)하면 더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음에도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

산출(00,000원/㎡, 제경비 포함)하여 사업비 00백만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그 결과 ΣΣ시 * * * * *에서는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00백만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끼쳤으며 수압시험비 0백만원 부당지급, 공사비 00백만원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차선도색 공사는 재시공 하고, 부당지급된 수압시험비 0,000천원은 회수 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